http://dx.doi.org/10.14400/JDC.2015.13.2.83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 연구

김병철
백석대학교 정보통신학부

A Study on the government's support policy to cooperatives

Byung-chul Kim
Dep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Baekseok University

요 약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많은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형태에 대해 해외사례와 국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향후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서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제어: 협동조합, 협동조합 설립, 협동조합 운영, 협동조합 정부지원, 협동조합 성공 사례

Abstract In 2012 many cooperatives have been establishing operations with the enactment of the Basic Law Cooperative. This study was carried out with Government support formed arround cooperatives by focusing on international practices, and the Korea Ca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what is important in the support of the government for future cooperatives.

Key Words : Cooperatives, cooperative unions, cooperative management, Government Support, Success case of Cooperatives

1. 서론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후 협동조합의 수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현재까지 6000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신설됐다. 기획재정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협동조합은 2014년 9월 기준 사회적협동조합(185개), 일반협동조합(5391개),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1개), 일반협동조합 연합회(24개)로 나뉜다.

그리고 소상공인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소상공인을 포함한 5인 이상(소상공인 비율 80% 이상)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협동조합을 일컫는데, 여기에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678억원의 정부 보조금이 투입됐다. 2013년 553곳에 407억원, 2014년에는 433곳에 271억원이 투입됐고 내년에도 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잡혀 있다(기재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이트 참조).

이처럼 정부의 지원을 받은 협동조합을 포함하여 많은 협동조합들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협동조합도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1].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대한 간단한 배경과 국내외 협동조합의 성공사례 분석을

* 이 논문은 2014년도 백석대학교 대학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Received 19 December 2014, Revised 29 January 2015
Accepted 20 February 2015
Corresponding Author: Byung-chul Kim(Baekseok University)
Email: bckim@bu.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통하여 협동조합 설립 시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2. 관련 연구

2.1 협동조합 기본법

2012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은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한 법이다. 동법은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일반법 부재로 인하여 설립이 불가능했던 소규모 협동조합의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종전 농협, 수협, 생협 등 8개 개별법에서는 300~1,000명 이상이었던 최소설립인원 기준을 5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다양한 경제영역의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용이하게 하였다. 단, 8개 개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될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2].

협동조합기본법은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2개의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법 제정 당시부터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에 적합한 조직이며, 이러한 법인격을 별도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정부 내에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3].

2.2 기본법의 제정 배경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은 2009년 UN이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정하고 국제노동기구(ILO), 세계협동조합연맹(ICA)과 함께 각국의 협동조합법제를 협동조합기본법 체제로 전환할 것을 권고함에 따른 국내의 입법조치이다.

이는 UN 등 국제사회가 시장실패, 정부실패, 특히 2008년 부터 시작된 국제금융위기 이후 세계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적 기업모델로서 협동조합을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내에서도 협동조합에 대하여 법적, 규범적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4].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대응하여 협동조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새로운 사회 통합적 경제모델을 우리 사회에도 구축할 필요성이 있었다. 협동조합은 투자자소유회가가 지분복수주의에 기초한 자본다수결 원리에 따르는 것과 달리 '1인 1표'라는 지분단일주의에 기초한 의사결정구조를 갖고 있다. 즉, 기업을 자본가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공동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인 것이다. 이러한 단체에 대하여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조합설립을 가능케 하려한 것이 법제정의 근본 취지였다.[3]

2.3 협동조합의 장점

협동조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일반 주식회사에 비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기 이전, 소규모 창업자가 기업모델로서 선택할 수 있는 기업유형으로는 개인기업, 민법상의 조합, 회사기업, 8개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이 있었다. 그러나 개인기업이나 민법상 조합은 사업실패에 대하여 사업자가 무한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선호되기가 어려웠고, 회사기업의 경우 조직의 엄격성 및 해산의 곤란성으로 인해 소규모 창업 유형으로는 적합하지 못하였다. 그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기업 유형이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출자, 이용, 운영 등 모든 측면에서 주인으로서 조합의 소유자인 동시에 이용자이고 또 운영자이지만, 협동조합은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이고 대부분 근거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된다는 점에서 법인이다. 즉,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한 자율적 단체이지만, 그 단체에게 부여된 법인격으로 인해 구성원들이 유한책임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5]. 이는 설립 시 주식회사로 할 것인지, 협동조합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협동조합과 주식회사를 비교하면 <Table 1>과 같다.

종래 우리 법제상 공동기업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은 조합 형태로서 민법상 조합, 상법상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이 있었고, 법인형태의 공동기업으로는 상법상 5종의 회사가 있었다. 그런데 민법상 조합은 조합의 재산관계가 합유(合有) 관계이며, 구성원들이 조합채무에 대하여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하고, 구성원들 모두가 업무집행에

〈Table 1〉 The difference between cooperatives and Co.

Domain	Cooperatives	Corporation
Way (means of production owned and operated)	Jointly owned and democratically operated as human constructs(One decision per one person)	Capitalists owned and operated as a capital formations(One decision per Shares)
Method	Through business	Through business
Purpose	Comm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needs and aspirations to achieve	Profit companies, investment dividends for shareholders
Subject	Spontaneously formed by people	Shareholders are voluntary participation, and workers livelihoods. Common economic interests
Form	Voluntary associations (independent of the capital and the country)	Country from the independent

관여한다는 점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기업의 창업 모델로서는 적합하지 않았다.

또 상법상 익명조합은 경제적으로는 공동기업의 한 유형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영업자의 개인기업에 지나지 않다는 점에서 완전한 공동기업 유형은 아니다.

또한 합자조합의 경우 인적자산을 적절히 수용하면서 기업의 설립 운영 및 해산과 관련하여 사적 자치가 폭넓게 인정되면서도 유한책임조합원을 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법인격이 없는 점 외에는 합자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창업기업유형으로서는 별다른 이점을 발견하기 어려워 보인다[6].

한편, 법인형태로의 창업의 경우를 보면 회사의 설립단계에서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기업의 운영단계에서도 운영기관을 설치해야 하는 등 조직구조가 엄격하며, 폐업시에도 엄격한 청산절차를 요구하는 등 소규모 창업유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밖에도 물적회사의 경우 조직구조의 엄격성, 인적자산에 대한 배당의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경영의 유연성이 발휘되지 못하며[7], 인적회사의 경우 사원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책임이 전가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한편 2011년 개정 상법은 최근 경제상황이 인적자산 중심의 지식기반형 산업중심구조로 변화됨에 따라 사적 자치를 존중하여 구성원의 인적 능력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가능한 영미법상의 유한책임회사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특별한 세제 혜택이나 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소규모 창업기업들이 동 제도를 선호하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8].

창업희망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업유형은 자연인 창업자가 단독으로 창업하는 개인기업 이거나 기업의 자본형성에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동기업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창업자의 입장에서는 개인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기업의 설립 운영에 있어서 간편하고, 대리비용 등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단순성 면에서 공동기업보다 유리하다. 그러나 개인기업 형태로의 창업은 자본조달, 기업의 영속성, 리스크의 개인부담이라는 점에서 불리하므로 기업의 발전이라는 비전을 가진 창업자로서는 자본조달이 용이하고 리스크를 다수인에 분산시킬 수 있는 공동기업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3.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지원 사례

3.1 협동조합의 환경 변화

협동조합의 역사가 깊은 유럽에서는 협동조합과 관련된 일부문제점 또는 개선과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스페인의 몬드라곤협동조합 복합체이다. 몬드라곤은 더이상 바스크지방의 협동조합이 아니다.

몬드라곤협동조합 복합체에 소속된 노동자중에서 러시아와 멕시코, 중국, 브라질, 인도,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고용된 인원은 201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약1만 6천명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몬드라곤협동조합 복합체에 협동조합만 속해 있는것도 아니다.

몬드라곤은 1990년대부터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주식회사형태의 자회사들을 만들었다. 특히 유통부문의 자회사들은 상당수가 비 협동조합기업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결과 몬드라곤에 소속된 260여개 회사 가운데 대략 절반만 협동조합 기업으로 존재하고 있다[9].

이런 정체성 변화는 협동조합의 의사결정구조에도 영

향을 미친다. 규모가 커지는 만큼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상시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총 이사회와 상임위원회, 사무국의 권력이 강해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상위기구인 몬드라곤협동조합 복합체가 자신의 규정으로 개별협동조합을 규제하려들기도 한다. 또한 노동자조합원들은 사업과 배당에 관심을 갖지 조합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뀐다면 이 조직을 협동조합이라 부를 이유가 없다[10].

3.2 정부지원 협동조합의 국내외 사례 분석

해외에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지원 또는 참여가 매우 적극적인 것을 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지방정부가 직접 참여한 이탈리아의 레가코프 소시알리(Legacoop Sociali)와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미국의 노스다코타주 협동조합을 살펴보고, 국내의 경우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된 소상공인협동조합에 대해 간단히 살표본다.

3.2.1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지역사회 협동조합

2005년 설립된 이탈리아의 레가코프 소시알리(Legacoop Sociali)는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의 전국협회로, 전국적인 협동조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동조합 간 연대를 통해 사회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는 역할 담당하고 있다. 2,300개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회원이며, 분야별로 보면 보건, 사회,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부문(A유형)이 1,400개, 취약계층을 노동력으로 편입하는 부문(B유형)이 800개, 협동조합 컨소시엄 100개 등이고 주요 활동은 사회정책 및 노동시장정책 분야의 진흥, 교육 및 연구 관련 컨소시엄 구성,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 지원 등이다.

레가코프 소시알리(Legacoop Sociali)에 소속되어 있는 협동조합의 하나인 이탈리아 볼로냐의 카디아이 협동조합(Cooperativa Sociale CADIAI)은 정부와 공동으로 또는 자체적으로 사회복지, 보건,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유형 A)로 1974년에 설립,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 사이의 대화와 아이디어 교환이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이라는 믿음 하에 노인,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서비스와 산업 안전 교육을 제공한다. 세부 내용은 <Table 2>와 같다[11].

〈Table 2〉 Types of social cooperatives in Italy

Basic Principles	- More than 80% of the dividend income is not available, the interest rate is limited by bond yields - 1 person one vote voting - No dividend liquidation assets (attributable to an existing organization) - The cooperative has legal personality and has a limited liability - The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is to contribute to the public good and promote social integration of citizens in the community
Type A	- Purpose: health, social, educational and social services - Composition: Outsiders (corporations, financial institutions, volunteer, etc.) can participate in up to 50%
Type B	- Purpose: To incorporate the social disadvantaged labor market (disability, addiction, etc.) - Composition: the underprivileged at least 30% participation

3.2.2 지방정부가 육성·지원하는 지역사회 협동조합 사례

미국 노스다코타주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신세대 농업 협동조합의 육성정책을 추진하였다. 노스다코타 주정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1991년 노스다코타개발계획(Growing North Dakota)을 수립하고, 이 개발계획에 고부가가치 농업 지원방안을 포함하였으며, 노스다코타미래기금(North Dakota Future Fund)을 설립하고 협동조합의 농산물 유통을 지원하였다.

노스다코타주 협동조합 지원정책의 최초 수혜자는 Dakota Growers Pasta Company로써 1992년 1,042명의 밀 재배농가에 의해 출범하고, 밀을 파스타로 가공하여 판매하였다. 또한 주식발행 및 주식거래 허용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주식과 출하권을 연계하고, 조합과 조합원간 판매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물량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한 신세대협동조합이다. 신세대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노스다코타 주정부 관련 기관의 지원내용은 <Table 3>과 같다[12].

3.2.3 국내 협동조합의 정부지원 사례

2012년 이전에는 특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이 설립·운영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웰빙(wellbeing) 트렌드와 함께

〈Table 3〉 Support information for North Dakota State agencies for activating a new generation cooperatives

Division	Support information
농산물 이용위원회 (The Agricultural Products Utilization Commission)	- Key supporting institutions of a new generation cooperatives in North Dakota state agencies - High-value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the main purpose is to enable the local economy to support a new generation cooperatives - To create five million dollars worth of funds until after the 1993 to 1997 funding for 160 projects supported agriculture - Research on high-value agricultural products, a new generation cooperatives feasibility study and business plan, marketing plan development support - Feasibility Study and accounting, legal advice, such as a new generation cooperatives established in the initial funding required - Consulting provides expert if you are writing a business plan is a new generation cooperatives
연방정부 The federal government	- Cooperative development funding (2000, 150 million dollars) to establish - Use of Commission funds and agricultural support - Agricultural selected processor to convert into energy cut funding - High-value agricultural products and market development funds for cooperative research center to study the pioneering Support
노스다코타 농촌전력협동조합연합회 (The North Dakota Association Rural Electric Cooperatives)	- Power Cooperative Association was faced with a financial crisis with a declining population of North Dakota is actively supporting a new generation cooperatives established to prevent the migration of the local economy and population - By 1995, $ 4 million for the new generation of low interest loans cooperatives - Electrical service at an affordable price for business early in the new generation cooperatives - Project preparation funding and Seminar, business strategy, including business support initial preparatory work
노스다코타은행 (Bank of North Dakota)	- North Dakota Bank fund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w generation cooperatives in the United States as the only state-owned bank loans - If you decide to finance the business plan, securing raw materials, such as mortgage-oriented approach and market reclamation - The loan terms in part, by mandating the consolidation guidance that management is self-financing - From 1990 to 1996 to support the 81 million dollars in value-added agriculture related business - Loan funds necessary to purchase a new generation cooperative shares
아이디어 시장 (Market Place of Ideas)	- Ideas Ideas Conference agricultural markets in North Dakota, farmers and government officials, university professors, and managers, including a combination of business and management involved a new generation cooperatives,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and the like research and experience of value-added agricultural products position to announce - Conference held over 100 times during the year 1998

생활협동조합이 급속히 성장하였다. 이는 2000년 이후 국민소득 증대와 고학력인구의 비율 증가에 따라 식생활 품의 안전성과 신뢰를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된 것으로써 특히 친환경·유기농산물에 대한 선호도 증대에 따라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인지도와 가입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생활협동조합 매출액도 동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0년의 경우 2008년에 비해 조합원수는 56%, 공급액은 75% 증가하였고, 매년 30%대의 급속한 속도로 사업량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iCOOP생협은 매년 50%대의 성장을 구가하고 있으며 <Table 4>와 같다[13].

또한 협동조합에 대한 국내 정부의 지원 사례는 2013년부터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비용을 지원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이 있다. 이는 협동조합기본법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통하여 지금까지 약 1000개의 조합이 설립됐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공동장소임차, 공동장비, 공동R&D,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네트워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운영 방법에 대한 지원보다는 장비나 마케팅 비용등을 지원하는 형태로써 그 실효성 및 협동조합 유지 비율이 낮은 점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Table 4〉 Consumer cooperative expansion of the organization and business

(Unit: Million Won, Persons, %)

Part	Kind	2008	2009	2010	Growth
Sales	A	133,437	159,442	190,940	43.1%
	B	130,150	205,300	280,000	115.1%
	C	40,554	55,583	70,260	73.3%
	D	11,338	15,367	20,529	81.1%
	E	23,839	28,360	33,548	40.7%
	Total	339,318	464,052	595,277	75.4%
The number of members	A	170,793	207,053	242,916	42.2%
	B	54,600	78,593	110,000	101.5%
	C	48,390	66,617	85,000	75.7%
	D	17,187	19,579	24,900	44.9%
	E	37,420	43,150	49,620	32.6%
	Total	328,390	414,992	512,436	56.0%

A. Hansalim
B. iCOOP Consumer cooperative associations
C. Dure Consumer cooperative associations
D. Minwoohoe Consumer cooperative
E. Others

4. 결론 및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보면, 협동조합 설립 시 다음과 같은 협동조합의 창업 적합성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UN의 협동조합 활성화 권고에 따라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은 세계협동 조합연맹(ICA)이 제정한 협동조합의 7대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7대 원칙은 (ⅰ)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ⅱ)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 (ⅲ)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ⅳ) 조합원의 자치와 독립, (ⅴ)교육 훈련과 홍보활동, (ⅵ) 협동조합간의 협동, (ⅶ)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이다[14].

또한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주로 기존 시장이 포괄하지 못한 부분에서 사회·경제·문화적 약자들이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동조합을 통한 소규모 창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1) 수요자, 민간 중심의 사회·경제적 패러다임 변화가 가속화 될 것이다. (2) 협동조합은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창업을 촉진하고 취약계층의 복지에 기여할 것이다. (3) 국내의 많은 자영업자 및 영세 법인사업자들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함으로써 규모경제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 기본법의 제정은 사회적기업의 출현을 촉진하여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활동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15].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소규모 창업환경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관심의 대상은 양적 확장보다는 질적 향상이 우성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의 설립이 쉬워지면서 '조합원의 실익증진'이라는 고유한 목적에서 벗어나 협동조합에게 주어지는 정책적 지원 등을 활용하여 '영리추구'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에 의해 협동조합이 무분별하게 설립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도 추가적인 협동조합 설립 지원 못지 않게 기존 협동조합에 대한 내 외부 및 외부에 의한 다각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고, 법위반 조합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발전가능성이 높고 조합정신에 부합되게 설립 운영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등 취약지역에 대한 공헌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정부의 복지기능을 보완하고 노동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청년 실업자나 노인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기능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데 이용되어야 하며 정부의 지원정책에서도 이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ACKNOWLEDGMENTS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Program funded by the Baekseok University.

REFERENCES

[1] Nelson, R. The complex economic organization of capitalist economies, Capipalism and society, 6(1), Article 2, 2011

[2] Jong-ik Jang, Ki-tae Kim,Yyeon-min Kim, Future direction of social enterprises and co-operatives

linked to the possibility of Korea sector, Working with the Foundation, 2011
[3] Hyeon-ju Lee, Sung-suk Jo, Policy Tasks for Settlement of the Social Cooperatives into the Social Enterpris,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Vol.29,No.1,pp.199-21, 2013
[4] Ki-tae Kim, How Cooperative Act can be a new hope?, GS & J institute, 154, 2013
[5] In-bang Song, Changes in small start-up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Basic Law for the implementation of cooperative, Chungnam Law Review, Vol. 24, No. 1 Jun, 2013
[6] Kang-hyun An, General commercial activities Commercial Law, Park-Young-sa, 2013
[7] In-bang Song, Ventures and commercial law revision, Legal Research, 2012
[8] Dae-Ik Jeong, Review of the Law on amendments to the new company type, Commercial Research, 2009
[9] Seong-oh Kim, The miracle of mondeuragon: employment growth for the happy, History bipyeongsa, 2012
[10] Whyte, W. Making mondragon: The growth and dynamics of the worker cooperative complex, Cornell university press, 1991
[11]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e future of coexistence and integration: With the cooperative, 2012
[12] Sou-hwan Kim, A Research on international best practices and implement measures for cooperatives, Small Business Research Institute, 2010
[13] Wan-hyeong Jo, Consumer Cooperative Movement and consumer cooperative activity, 2010
[14] Zamagni.S & Zamagni.V, Cooperative Enterprise: Facing the Challenge of Globalization. UK: Edward Elgar, 2010
[15] Keum-no Lee, Cooperatives enacted the Basic Law of the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Consumer Policy Review p.10, 2013

김 병 철(Kim, Byung Chul)

- 2005년 8월 : 충북대학교 전자계산학과(이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정보통신학부 교수
- 2007년 3월 ~ 2010년 11월 : 충남대학교 전기정보통신학부 겸임교수
- 관심분야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융합기술, 영상처리, 정보보안
- E-Mail : bckim@bu.ac.kr